

# 住宅建設促進法 施行令中改正令

1977년 8월 14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100호 이상”을 “50호 이상”으로, “100세대이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2조의 2를 제22조의 3으로 한다.

제22조의2(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①대한주택공사가 동일한 규모의 국민주택(국민주택과 동일한 규모의 주택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사본을 관계 부·처·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한주택공사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2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도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2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및 제3항의 사업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22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 중 표본설계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 5일전에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표]

국민주택채권첨가매입대상 및 금액표

(단위 : 원)

첨가매입대상	첨가매입금액
1. 귀금속점포영업허가	100,000
2. 엽총소지자허가	30,000
사행행위허가	
가. 복표발행(현상을포함한다)	500,000
나. 스러트머신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300,000
다. 카지노	3,000,000
4. 주류판매업허가(도매업)	100,000
5.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6. 수렵면허	
가. 갑종면허	5,000
나. 을종면허	100,000
7. 특정외래품판매업허가	50,000
8.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한다) 주거전용건축 물은 연면적이 85평방미터(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 이외 의 건축물은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인 때에 한하 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 되, 증축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1973. 2. 26)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년 2월 27일 이후 19 75년 1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주거전용 건축물로 서 증축후의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인 주거전용 있어서는 증축후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주택채권을 첨가매입하게 한다.	
또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연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주택채권을 첨가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전용건축물	
(1)연면적 85평방미터 초과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1,000
(2)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132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4,000
단독주택	3,000
공동주택	
(3)연면적 132평방미터 이상	연면적 3·3평방 미터당
16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7,000
단독주택	6,000
(4)연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연면적 3.3 평방미터당
23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15,000
단독주택	

다. 여인숙영업 (연면적 165 평 방미터 이상에 한한다)		(마)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u>60</u>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70,000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u>1,000</u>
(2) 각 도청소재지	50,000	기타지역	<u>55</u>
(3) 기타지역	30,000		<u>1,000</u>
20. 유기장업 허가		(바) 1억원 이상	<u>70</u>
가. 당구장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u>1,000</u>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기타 지역	<u>65</u>
(2) 각 도청소재지	70,000		<u>1,000</u>
(3) 기타 지역	50,000		
나. 기원		(2) 주거전용건축물 이외의 부동 산과세 표준액이	과세 표준액의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30,000	(가)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u>25</u>
(2) 각 도청소재지	20,000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u>1,000</u>
(3) 기타 지역	10,000	기타지역	<u>20</u>
다. 골프장	5,000,000	(나)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u>40</u>
라. 골프연습장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u>1,000</u>
옥외	200,000	기타지역	<u>35</u>
옥내	100,000		<u>1,000</u>
마. 볼링장	1,000,000	(다)	<u>50</u>
			<u>1,000</u>
21. 목욕탕업 허가			<u>45</u>
가. 목욕탕(터키탕 및 증기탕을 포함한다)		나. 상속보존	과세 표준액의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0	과세 표준액이	
(2) 각 도청소재지	700,000	(1)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u>25</u>
(3) 기타 지역	500,000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u>1,000</u>
나. 공중탕(사우나 포함분에 한한다)		(2)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u>20</u>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500,000	서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천시	<u>1,000</u>
(2) 각 도청소재지	400,000	기타지역	<u>35</u>
(3) 기타 지역	300,000	(3) 1억원 이상	<u>60</u>
22. 전화가설허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u>1,000</u>
가. 9급지이상 자동구역	대당 12,000	기타 지역	<u>55</u>
나. 6급지이상 8급지 자동구역	대당 6,000		<u>1000</u>
다. 가입전신 가입승락(텔레스)	대당 24,000	다. 저당권 설정 및 이전	과세 표준액의
23. 부동산등기		과세 표준액이 500만원이상	
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u>10</u>
(1) 주거전용 건축물		기타지역	<u>5</u>
건축물(토지포함) 의 과세표준액이			<u>1,000</u>
(가) 1,000 만원이상 2,000 만원미만	<u>20</u>	(다만, 첨가매입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 하지 못한다.)	
(나) 2,000 원이상 3,000 만원미만	<u>35</u>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u>1,000</u>		
기타 지역	<u>30</u>		
(다) 3,000 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u>40</u>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u>1,000</u>		
기타 지역			
(라) 4,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서울특별시, ,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u>50</u>		
기타지역	<u>1,000</u>		
	<u>45</u>		
	<u>1,000</u>		
24.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			
가. 특급차(수입가격 500만원이상의 차이거나 배기 량 2,500cc이상의 차)			
나. 고급차(배기량 2,000cc이상의 차)			
다. 일반차((군장관급장교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책임기술원 및 선임연구원			
(1)갑종(배기량 1,500cc이상의 차	대당	700,00	
(2)을종(배기량 1,000cc이상의 차	대당	250,000	
(3)병종(배기량 1,000cc미만의 차)	대당	200,000	
라. 소형차(凿, 퍼브리카)	대당	120,000	
25. 자동차 운송일선사업 또는 대여사업면허			500,000

공동주택	12,000	면허 수수료의 $\frac{29}{100}$
(5) 연면적 231 평 방미터 이상 330 평 방미터 미만인 경우	연면적 3·3평 방 미터당 30,000	과세 표준액의 $\frac{15}{100}$
(6) 연면적 330 평 방미터 이상 660 평 방미터 미만인 경우	연면적 3·3평 방 미터당 50,000	
(7) 연면적 660 평 방미터 이상 인 경우	연면적 3·3평 방 미터당 80,000	
나.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다만, 공장의 경우는 인구 50만인 이상의 지역에 한하여,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교육용, 종교용,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 극장, 영화관, 빠, 가바레, 요정, 오락장 및 사치성 욕장용 건축물 요정, 오락장 및 사치성 욕장용 건축물	연면적 3·3평 방 미터당 12,000	
(2)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연면적 3·3평 방 미터당 4,000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연면적 3·3평 방 미터당 3,000	
(4) 시멘트벽돌 및 분록조의 건축물	연면적 3·3평 방 미터당 2,000	
다. 관광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3·3평 방 미터당 1,500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나목을 적용한다.		
(2) 건축 물의 연면적이 165 평 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9. 건설업면허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의 $\frac{1}{1000}$ )	
가. 일반공사업	$\frac{1}{1000}$	
나. 특수공사업	$\frac{1}{1000}$	
다. 단종공사업	$\frac{1}{1000}$	
10. 해외건설업면허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의 $\frac{1}{1000}$	
11. 주택자재생 산업 면허		
가. 시멘트 가공제품생 산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50,000	
(3) 기타 지역	30,000	
나. 기타 생 산업	100,000	
12. 공유수면 매립 면허		
13. 중기 신규등록		
14. 중기사업 신규허가 가. 대여업		
(1) 종합중기대여업	200,000	
(2) 단종중기대여업	100,000	
나. 정비업		
(1) 종합중기정비업	100,000	
(2)부 분종기정비업	50,000	
15.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신 평가액)의 $\frac{1}{1000}$
16. 측량업 등록		50,000
17. 건축사 사무소등록	인천시	
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100,000	
나. 각 도청소재지	50,000	
다. 기타지역	30,000	
18. 식품영업허가		
가. 유홍전문음식점 영업	700,000	
나. 일반유홍음식점 영업	인천시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기타지역	100,000	
다. 대중음식점 영업 (특수유홍음식점 영업, 전문음식점 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포함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50,000	
(2) 각 도청소재지	100,000	
(3) 기타지역	70,000	
라. 과자점, 다방영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300,000	
(2) 각 도청소재지	200,000	
(3) 기타지역	100,000	
마. 유제품·마아가린 및 쏘트닝유·식육제품·통조림 또는 병조림·청량음료 및 당류제조업 허가		
(1) 서울특별시, 대구시, 인천시	200,000	
(2) 각 도청소재지	150,000	
(3) 기타지역	100,000	
19. 숙박영업허가		
가. 호텔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400,000	
(3) 기타지역	300,000	
나. 여관영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70,000	
(3) 기타지역	50,000	